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33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윤종오·박은정·황명선

정춘생 · 김준형 · 전종덕

정진욱 • 조 국 • 김동아

김태선 · 정혜경 · 김종민

한창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되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그런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과적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는 적용 대상이 일부 운송품목으로 한정되어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기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대조항"이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되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현실에 맞

게 개선하며,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을 심의·의결 및 공포대상으로 하여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액수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제67조제1의 신설, 제70조제1항 신설)

또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서 화물노동자의 소득도 "적정 이윤"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었는데, 화물노동자의 경우 노무제공의 대가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적정 소득"으로 표현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동수로 법에 명시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들 숫자의 균형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5조의9제2항 신설, 제5조의10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제5조의2"를 "제5조의9"로, "제5조의4"를 "제5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정 이윤"을 "적정 이윤 또는 적정 소득"으로, "제5조의2"를 "제5조의9"로, "제5조의4"를 "제5조의11"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등 안전운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부대조항(이하 "안전운임 부대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 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 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 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 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

- 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 송원가를 심의·의결한다.
-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 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 또는 적정 소득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 또는 적정 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등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종류별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차량 종류별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 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및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공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 종류별 운송품목의 수를 전년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세부유형이 일반카고트럭류, 냉장·냉동자동차류, 내장자동차류, 보냉자동차류, 윙바디(Wing-body)자동차류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최대적재량이 1톤, 5톤, 12톤, 25톤인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 5.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세부유형이 탱크로리류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운송되는「물류정책기본법」 제 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 6.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차종으로 한정한다)로 운송되는 자동차
- 7.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 사업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 간 운송되 는 택배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종류별 운송품목
-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및 안전운임 부대조항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등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 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⑤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등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및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 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 또는 안전운임 부대조 항 불이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 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 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 2. 제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12
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	
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	
<u>의2</u> 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	제5조의9
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제5조의4</u> 에 따라 국토	<u>제5</u> 조의 <u>11</u>
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13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	
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	
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2에 따른 화 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제5조의4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 나. (생략) 제5조의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 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 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 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 류 등에 관한 사항
- 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u>적정</u>
이윤 또는 적정 소득
<u>제5조의9</u>
제5조의11
가.•나. (현행과 같음)
/ 사

<u><삭 제></u>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 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 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 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 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 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 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 의결한다.

-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 비용
-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 3. 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 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 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

<삭 제>

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 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 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 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 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 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

<삭 제>

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 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 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 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 다.
-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 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 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 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삭 제>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

<삭 제>

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 <삭 제> 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 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 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 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 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

- 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등 안전운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부대조항(이하 "안전운임 부대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 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 류 등에 관한 사항
-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 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 <u>명</u>
- 2.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3명
-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 ③ 위원회에는 제2항 각 호의 위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 무원으로 구성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 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자문이나 위원회 심의·의결사 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 여 위원회에 해당 분야 전문가 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에 위원회 사무 중 일부를 위 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신 설>

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 의・의결한다.

-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 비용
-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 또는 적 정 소득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 또는 적정 소 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등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

- 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차량종류별 운 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 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차 량 종류별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 차 안전운임 및 안전운임 부대 조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 종 류별 운송품목의 수를 전년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및 시멘트 원료
-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세부유형이 일반카고트럭류, 냉장・냉동자동차류, 내장자동차류, 보냉자동차류, 윙바디(Wing-body)자동차류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최대적 재량이 1톤, 5톤, 12톤, 25톤인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 5.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세부유형이 탱크로리류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운송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같은 법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 6.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차종으로 한정한다) 로 운송되는 자동차
- 7.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
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 간 운송
되는 택배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차량 종류별 운송품목
- ③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및 안전 운임 부대조항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등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 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 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 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 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

<신 <u>설></u>

<u>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u> 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 <u>다.</u>

-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화물차 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 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 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⑤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안전

 운임
 부대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등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 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 동차 안전운임 및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 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 또는 안전운임 부대조항 불이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 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2. (생략) <신 설>

2. ~ 7. (생 략) 제70조(과태료) <신 설>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 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 · 1의2. (현행과 같음)
-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 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자
- 2. ~ 7. (현행과 같음)
-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 2. 제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 물자동차 안전운임 부대조항 을 준수하지 않은 자
- <u>②</u> ~ <u>④</u> (현행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와 같음)

① ~ ③ (생 략)